

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1. . .
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언적 조문을 명시적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14조제2항의 일부 조문 변경

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보호”를 “보호조치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14조(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) ① (생략)	제14조(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 보호조치----- -----.